

아동학대 예방 PR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위한 아동학대 척도 개발 연구

홍문기 한세대학교 미디어영상광고학과 교수*

박혜영 서강대학교 언론문화연구소 선임연구원**

배경 및 목적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 파악해 아동학대 예방 PR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방법

전국 17개 시·도 20~60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지역/성/연령별 비례를 고려해 할당 추출한 표본을 대상으로 온라인 서베이를 진행하여 1차 연구에서 300명, 2차 연구에서 700명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 국민들이 아동학대라는 개념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 인식 유형에 관한 구성 척도를 개발하고자 하였으며 아동학대와 관련된 척도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확인적 요인 분석, 법칙망조직 분석 등을 진행했다.

결과

연구 결과, 우리나라 국민들은 그동안의 이론적 논의와 법적 유형 구분과 달리, 신체적 학대를 가벼운 신체적 학대와 심각한 신체적 학대로 구분하여 인식하고 있었으며 성적 학대의 경우도 가벼운 성적 학대와 심각한 성적 학대로 구분해 인식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와 '성적 학대' 관련 인식이 기존의 법령이나 문헌과는 다르게 형성됨이 확인됐다.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를 통해 도출한 척도를 인구통계학적 속성(예: 지역/학력/직업 유형/소득 등)으로 분석한 결과, 아동학대 관련 국민 인식이 성별/연령별 집단 간 차이가 있음이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이에 따른 공중의 세분화 가능성을 타진하고, 이에 따른 메시지 구성, 미디어 활용과 같은 PR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제안했다.

KEYWORDS 아동학대, 척도 개발, 신체적 학대, 성 학대, 방임, 정서적 학대, 언어적 학대

* hmoonki@gmail.com, 제1저자

** cheerupyou@naver.com, 교신저자

서론

한 사회의 아동들이 가정 혹은 학교에서 학대를 받아 신체적으로 위협하거나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황에서 성장한다면 이는 개인 및 가족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다. 특히 개인은 어린 시기의 학대 경험을 성인기 학대 경험보다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임으로 (Jeong, 2006; Santrock, 2006) 더욱 그렇다. 어린 시기에 학대받았던 아동들은 그렇지 않은 아동들에 비해 낮은 수준의 정서 인식, 정서 표현, 정서 조절 등을 보이거나 부적절한 정서 조절 전략을 사용하게 된다(Choi & Han, 2008). 학대를 받은 아동들은 자아 존중감, 또래 간 커뮤니케이션 기술, 대인관계 등에서도 부정적 결과를 나타내며 상대에 대한 공격적 성향도 높게 나타난다는 것이 선행된 연구를 통해 확인된 바 있다(예: Anthonysamy & Zimmer-Gembeck, 2007; Darwish, Esquivel, Houtz, & Alfonso, 2001; Lee, 2004; Lee & Yoo, 2011; Kim, 2009; Kim & Choi, 2011; Sin & Choe, 2003).

어린 시기 학대의 영향은 신체적·정신적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부정적 영향은 개인의 성장과 더불어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채 심화된다(Springer, Sheridan, Kuo, & Carnes, 2007). 어린 시기에 경험한 학대는 아동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성인이 된 이후 심각한 사회적 병리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Lee, 2004)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받았던 학대 경험을 바탕으로 다시 자녀들을 학대하는 부모가 되는가 하면, 아동학대 과정을 통해 가정에서 학습한 폭력적 행위를 사회적으로 행

사하게 된다(Lee, 2004; Kim, 2009; Sin & Choe, 2003). 이처럼 한국 사회에서 아동학대가 가정이나 학교에 국한한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회 문제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은 얼마 되지 않았다.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칠곡 계모 사건, 울산 계모 사건, 인천 11세 소녀 학대 사건, 부천 초등학교 아들 시신 훼손 사건, 평택 아동 암매장 사건(일명 원영이 사건), 7세 손자 폭행 치사 사건, 어린이집 학대 사건 등 아동학대 사건들이 연이어 언론에 보도되면서 최근 우리 사회는 아동학대를 심각한 사회 범죄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과거 한국 사회에서 아동학대가 문제로 인식되지 않았던 것은, 유교적 전통을 기반으로 학대와 혼육의 애매모호한 경계 때문인지 모른다. 아동학대는 가정 내 문제로 치부되었고,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아동학대를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게 했다. 이는 결국, 아동학대에 대한 적극적 예방이나 PR 캠페인의 필요성을 인식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그러나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온라인 카페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의 발달로 아동학대 관련 정보와 이슈의 확산이 빨라지면서 우리 사회에서 아동학대를 범죄로 인식하는 경향이 늘어나게 되었다. 여기에 2014년 「아동보호에 대한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에는 일반인 또한 아동학대가 범죄이며, 이에 대한 처벌이 시행됨을 점차 인식하게 되었다. 그러나 아동학대 관련 법령에 대한 인식만으로 아동학대 문제를 예방하기에는 역부족이며 예방 메시지를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법령에서는 아동학대 유형을 신체적/정서적/성

적 학대와 방임으로 구분해 다루고 있으나 우리 국민이 이를 실제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어느 정도까지의 체벌을 훈육이라 할 것인지, 아동의 나쁜 습관이나 버릇을 고치기 위한 훈육과 아동학대는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남의 가정 일에 어느 정도까지 개입하는 것이 옳은지 등에 대한 판단에 있어 정확한 기준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학대에 대한 법적/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 아동학대의 유형과 그 구성 체계를 실증적으로 연구해 아동학대 인식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개발된 척도와 구성 개념을 활용해 아동학대 인식에 대한 공중 간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효율적 PR 커뮤니케이션 전략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문헌 검토

아동학대 개념

아동학대는 아동을 대상으로 학대를 가하는 것이다. 따라서 아동학대의 개념은 아동의 범주를 규정하고 학대가 무엇인지 설명하면 쉽게 이해된다. 개정된 「아동복지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 타법 개정)에서 아동은 ‘18세 미만인 사람’(동법 제3조 제1호)으로 규정돼 있다. 또한 학대는 형법 제273조에 의해 “신체적·정신적 가해 행위를 통해 유기에 준할 정도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협을 야

기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이에 근거해 「아동복지법」 제3조 7호에서는 아동학대를 “성인(보호자 포함)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동법 제3조 제7호)으로 정의하고 있다.

아동학대는 1962년 “피학대 증후군(battered child syndrome)”이라는 용어에 근거해 미국에서 처음으로 사용됐다(Baldwin, 2001). 처음 아동학대라는 개념이 도입됐을 때는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에 그 개념이 국한돼 있었다. 이러한 협의의 개념으로서 아동학대는 관찰 가능한 신체적 상처를 입은 아동에 대한 가혹 행위를 의미했다. 이러한 관점에서의 아동학대 개념은 학대의 판정 기준이 명확하고 의학적 검증이 용이하다는 점에서 유용했다. 그러나 이 관점에서의 아동학대는 행위의 결과에 근거해 상처의 유무를 기준으로 학대를 파악하기 때문에 우연으로 인한 상처와 가해자의 의도적인 행위에 의한 상처를 분별하기 어렵고, 상처를 남기지 않는 신체적 학대는 배제되는 경향이 발생하게 된다(Kempe & Helfer, 1980). 이 때문에 켐프와 헬퍼(Kempe & Helfer, 1980)는 아동학대에 의도성을 포함해 설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계기로 신체적 학대를 받은 아동을 피학대 아동(battered child)이라고 정의하면서 아동학대를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부모 또는 다른 보호자의 행위 및 태만의 결과로 인해 아동이 신체적 상처를 입는 것으로 정의하게 되었다. 여기에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그리고 방임까지 아동학대에

포함되면서 아동학대 개념은 그 범위가 점차 넓어졌다(Yeo, 2007).

광의의 개념으로 아동학대는 학대로 인해 아동이 신체적/정서적 발달상의 영역에서 환경적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모든 상황을 의미한다(Kim & Cho, 2015). 따라서 광의의 아동학대는 적극적인 신체적/정서적 학대 행위는 물론, 부모/교사/친족의 부적절한 양육 태도, 거부, 방임까지도 포함된다. 이 같은 광의의 아동학대 개념은, 아동학대를 아동의 동등한 권리나 자유를 박탈하거나 아동의 성장 발달을 저해한 개인, 시설, 사회 전체의 행위와 태만 및 그 조건들로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있다(Gil, 1970). Gil(1970)에 따르면 학대의 주체는 부모나 양육자뿐만 아니라 전체 사회 혹은 제도도 포함된다. 이 경우 학대 유형은 신체적/비신체적 학대뿐만 아니라 방임을 포함한 아동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하는 모든 사회적/제도적 환경도 학대 유형에 포함되게 된다. 이러한 아동학대 관련 광의의 개념은 학대가 발생하기 전 아동보호를 위한 1차적 예방 서비스와 개입 대책에는 유용할 수 있다. 그러나 아동학대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이에 대한 인식의 차도 너무 커 학대 사례에 대한 실제적 적용에 어려움이 따른다는 지적도 있다(Yeo, 2007).

아동학대 유형

아동학대와 관련해 법적/제도적으로 규정되는 유형은 신체적 학대(physical abuse), 정서적 학대(emotional abuse), 성적 학대(sexual abuse), 방임(neglect) 등이다. 우선, 「아동복지법」 제17조에서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

강 및 발달을 해치는 행위’를 ‘신체적 학대’로 정의하고 있다. 신체적 손상은 구타 등에 의한 멍, 화상, 찢김, 골절, 장기 파열, 신체 기능의 손상 등을 의미한다. 특히 생후 12개월 이하의 영아를 대상으로 한 체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심각한 신체 학대로 간주된다(Lee, 2004). 신체적 학대는 1차 신체적 학대와 2차 신체적 학대로 구분된다. 1차 신체적 학대는 골절, 두개골 훼손, 심한 화상 등처럼 신체 손상의 정도가 심각한 것을 의미하고, 2차 신체적 학대는 작은 멍, 약한 화상 등 신체 손상이 미약한 것을 뜻한다(Pecora, Whittaker, Maluccio, Barth, & Plotnick, 2000). 아동에게서 발견된 다양한 유형의 부상은 우발적/일회적 폭력의 결과인 경우와 반복된 폭력에 의한 것 등 다양한 원인에 기인한다(Kim, 2007). 신체적 학대에 노출된 아동은 정신 지체, 언어 장애, 발달 지연, 중추 신경계 장애, 과잉 운동성, 충동성 등을 보이는데 이는 신체적·심리적 충격으로 인해 위협적 상황에 직면하게 됨을 뜻한다(Kim, 2014).

둘째, ‘정서적 학대’는 아동의 자아 존중감을 약화시키고 아동의 정서를 심각히 훼손하는 말과 행동을 통해 이루어진다. 아동의 인격이나 감정·기분을 심하게 무시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아동에게 욕설을 퍼붓는 행위, 좁은 공간에 장시간 혼자 가두어 놓는 행위, 집 밖으로 내쫓겠다고 하거나 원망적·거부적·적대적 또는 경멸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행위 등이 정서적 학대에 해당된다(Yeo, 2010). 이러한 행위는 아동의 심리적·정서적·사회적 기능에 손상을 가져와 애정과 자아 존중감의 결핍을 초래하고, 정서적으로 소외감과 불안감을 가지게

하며, 의욕과 자신감이 부족해지는 등 아동의 정서적 발달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Han, 2006). 직접적인 정서적 학대는 아동에게 폭언 또는 아동을 거부하는 행동이나 표정 등을 말하며, 간접적인 정서적 학대는 가족 간의 불화에 의한 폭언 등으로 아동에게 정신적인 손상을 가하는 행위이다(Yeo, 2010).

셋째, ‘성적 학대’는 성인의 성적 충족을 위해 아동을 성적으로 이용하거나 이를 위해 아동에게 행하는 모든 성적인 행위를 의미한다(Han, 2006). 성적 학대는 성에 미성숙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부적절한 성적 행위를 통해 이루어진다. 구체적인 성적 학대 행위에는 성기 삽입이나 접촉뿐만 아니라 자위행위 장면 노출, 아동에게 포르노 비디오를 보여 주거나 포르노물을 판매하는 행위 등도 포함된다. 이는 아동 성매매 등은 물론이고 보호자의 부부관계 및 자위행위 목격 등 아동이 부적절하게 성에 노출되는 것 역시 성적 학대에 해당됨을 의미한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Central Child Protection, 2015). 성적 학대는 아동의 정체감에 혼돈을 주고,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 대한 불신, 성 의식의 왜곡 등의 결과를 초래해 아동이 성장한 후까지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Kim, 2014). 성적 학대를 경험한 아동들은 성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또래들과 어떤 방법으로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에 대해 혼란스러워한다. 성적 학대 경험을 통해 왜곡된 방식으로 타인과 관계를 맺으려 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또래 집단으로부터의 소외, 이질감, 외로움, 고립 등을 느끼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Han, 2006).

넷째, ‘유기/방임’은 아동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양육자/보호자가 고의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영유아의 신체적, 지적, 정서적 능력을 개발하는 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요소들을 제공해 주지 못해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정서적 박탈감을 경험하게 되는 상황을 의미한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1). 방임은 물리적 방임, 교육적 방임, 의료적 방임 등으로 구분된다. ‘물리적 방임’은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거나, 상해와 위협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지 않는 불결한 환경 또는 위험한 환경에 아동을 그대로 내버려 두 방치하는 행위 등을 의미한다(Mun, Ku, Park, & Kim, 2007). ‘교육적 방임’은 양육자가 아동을 학교에 보내지 않아 아동이 무단결석을 하게 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Park, 2016). 학교 준비물 등을 제대로 챙겨 주지 않는 행위 등을 포함해 아동의 교육적 욕구를 무시하거나 소홀히 하는 행위 등도 ‘교육적 방임’이라 볼 수 있다. ‘의료적 방임’은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는 행위를 뜻한다. 특히 신체적 상해를 당하거나 기본적 예방 접종이 필요한 아동에게 예방 접종을 실시하지 않는 행위 등도 의료적 방임에 포함된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Central Child Protection, 2015). 방임으로 인한 아동학대는 즉시 그 결과가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경향이 있지만 그 누적 효과는 신체 학대 못지않게 치명적임이 밝혀지고 있다(Mun et al., 2007). 방임 유형의 아동학대를 경험한 아동들은 가정 내에서 지적 자극을 받지 못해 유치원이나 학교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므로 언어 능력, 집중력, 표현력 등 기초적 지적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향을 보인다(Mun et al., 2007).

아동학대 인식 관련 연구

국내 아동학대 인식에 관한 연구는 1980년대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를 시작으로(예: Kim, 1987; Lee & Kim, 1996) 1990년대 일반인을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지면서 본격화되었는데(예: Kim, 1990), 어머니-자녀 간 아동학대에 대한 지각 성향에 대한 연구(예: Ko, 1992), 부모, 자녀,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연구 등이 진행되었다(Che, 1994). 「아동복지법」이 개정된 2000년도에는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연구가 보다 많아졌다(예: Han, 2000; Kim, 2000; Lee, 2000;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Central Child Protection, 2003; Yu, 2002). 이 시대 아동학대 인식에 대한 연구의 특징은 연구 대상이 교사, 부모 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 신고 의무자 등 아동학대 전문가와 일반인 간의 인식 연구에 주목했다는 점이다. 또한 이 시기에는 유아 학대에 대한 교사 인식 연구도 늘어났다(예: Chi & Ma, 2000; Lee, 2000).

아동학대 인식에 대한 연구에 있어 아동의 범위, 학대 유형의 범주, 학대의 개념화 등에서 합의점이 제시되지는 못했다(Chan, Elliott, Chow, & Thomas, 2002). <Table 1>을 통해 아동과 유사한 표현들이 연령/법령 등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이처럼 각종 법령에서 아동 관련 대상 연령을 다르게 정의하거나 같은 연령에 대해서도 다른 호칭을 부여하므로 아동의 범주가 합치되지 못했다. 또한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아동’이라는 용어나 아동 유사 개념에 대한 정의가 없음에도 하위 법률에서는 각 입법 목적에 따라 아동,

연소자, 미성년자, 소년, 영유아, 청소년 등 아동과 유사한 개념들을 사용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형법」 제273조에서 학대를 “신체적·정신적 가해 행위를 통해 유기에 준할 정도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야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아동복지법」의 아동학대 개념에 따라 「형법」상 학대의 의미와 별도로 아동학대 범죄를 규정해 처벌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동법에서는 아동학대범죄를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형법상 폭행죄, 상해죄, 유기죄, 학대죄, 체포·감금죄, 협박죄, 약취·유인 및 인신 매매죄, 강간죄, 추행죄, 명예 훼손, 주거 침입, 사기죄, 공갈죄, 강요죄, 손괴죄 및 그 치상의 죄 등과 「아동복지법」상의 아동학대에 해당하는 경우 및 아동학대 치사, 아동학대 중상해, 상습범”(동법 제2조 제4호 가~하목) 등으로 규정함으로써, 아동학대 관련 법령에서조차 아동학대의 개념이 일치되지 못했다.

또한 아동학대 연구에서 인식에 대한 차이점에 대한 연구가 주로 진행되었는데 아동학대 인식 연구에서 인구사회학적 변인들에 대한 인식 차이가 논의되었다. 이를 정리해 보면, 성별, 연령, 학력, 전문가와 일반인 등 집단에 따라 아동학대 인식의 차이가 나타났다. 우선 성별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아동학대 행위에 대해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물론 아동학대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인식하였다(Crosson-Tower, 2010; Kim, 2006; Kite & Tyson, 2004;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Central Child Protection, 2003). 또한 아동학대 관련 전문가 집단에 대해 연구한 김영주와 박혜

Table 1. Similar expression of children by age / legislation

Law	Title	Target Age
Criminal law	Criminal minor	Under 14 years
Juvenile law	juvenile	Under 19 years
Act on the Treatment of Protected Boys and Others		
Youth Basic Law	Teenager	9 to 24 years of age (Article 3)
Youth Protection Act		Under 19 years
Act on the Protection of the Sex of Children and Adolescents	Children and Adolescents	Under 19 years
Child Welfare Act	child	Under 18 years
Punishment of child abuse crime Special Act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		
Road Traffic Act	child	Under 13 years
Broadcasting law		
Civil law	minor	Under 19 years
Labor Standard Act	Minor	Under 18 years
Infant Childcare Act	Infants and Toddlers	Pre-school children under 6 years of age
Mother and Child Health Law		After 6 years of age

원(Kim & Park, 2001)의 연구에서는 전문가 집단
의 경우 연령이 낮고 재직 기간이 짧을수록 아동학
대에 민감하고 이를 심각하게 여겨 신고할 가능성
이 더 높았다. 그러나 일반인의 경우 연령별 차이가
없거나(Kim, 2006; Kim, Yun, & Lee, 2006; Lee
& Kim, 2002), 오히려 연령이 높을수록 아동학대
인식도가 높아졌다(Hong & Lee, 2010). 또한 학
력이 높을수록 아동학대에 대해 더 민감하게 인식한
다는 결과도 있었다(Lee 2009; Yun, 1997). 이처
럼 아동학대 관련 논의들을 정리해 보면, 아동학대
문제를 다루는 집단이나 성별, 연령 등의 특성에 따
라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나타났다.

허친슨(Hutchison, 1990)은 신체적 학대의 경
우 다른 아동학대 유형과 달리 일반인, 신고 의무
자, 전문가 등 집단별 인식에 차이가 거의 없음을
밝혔다. ‘칼이나 흉기로 위협을 하는 행위’와 같은
심각한 학대 행위에 대해서는 신고 의무자, 전문가,
일반인 모두 아동학대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Lee, 2009;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Central Child Protection, 2003). 찬과 그의
동료들(Chan et al., 2000)이 진행한 전문가, 일반
인을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도 조사 결
과에서도 이와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잘못할
때 꼬집는다”와 “잘못할 때 회초리나 빗자루로 때

린다” 등의 문항에 대해서는 일반인과 전문가 집단(의사, 사회복지사, 교사) 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Chan et al., 2000), “회초리로 때린다” 등 훈육을 목적으로 할 때 일반인들은 학대로 인식했지만 교사들은 학대가 아니라고 보았다(Yun, 1997).

PR 커뮤니케이션과 공중 분류

PR은 본디 조직과 이해 공중 간 커뮤니케이션 관리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Grunig & Hunt, 1984). 즉, PR이란 공중(public)과의 관계(relations) 관리(management)를 뜻한다. 이처럼 PR에서 공중은 주요한 요소로, PR에 있어 공중의 속성을 이해하는 일, 공중이 이슈와 관련해 어떠한 태도를 보이는지 파악하는 일 등은 전략적인 관계 형성에 있어 중요하게 다뤄져 왔다(Aldoory & Sha, 2006; Grunig, Grunig, & Dozier, 2006). 공중의 속성을 파악하지 않고 PR 활동을 하는 것은 시간/비용/노력을 낭비하는 무의미한 커뮤니케이션 활동이 될 수 있으며(Kim, Ni, & Sha, 2008) 이 때문에 공중의 세분화는 효율적 PR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전략으로 주요 연구 주제로 논의되어 왔다.

이때 공중의 세분화는 공중에게 의도된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전달할 수 있으며, 정교한 의사 결정을 하고자 하는 전략적 토대를 위해, 그리고 메시지 구성과 미디어 활용 측면에서 필요한 작업이 아닐 수 없다(Rose, Bearden, & Manning, 1996). 또한 공중 세분화는 구체적인 이해 당사자 그룹을 대상으로 PR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할 수 있게 함으로

써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았다(Kim et al., 2008).

한편, 공중 분류를 위한 대표적 분석 틀인 상황 이론(situational theory)은 공중이 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언제 주로 커뮤니케이션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유용한 이론으로 활용되고 있다(Adoory & Sha, 2007). 1968년 그루닉(Grunig)이 상황 이론을 소개한 이후 상황 이론은 쟁점에 대한 지각 및 인식 등을 기반으로 공중을 세분화해 왔다. 이러한 연구들은 이슈와 관련된 상황에 대한 지각이 공중 형성 요소의 기반이라는 전제하에 상황에 대한 문제 인식(problem recognition), 제약 인식(constraint recognition), 관여도 (involvement), 그리고 참조 대상 기준(referent criterion) 등 네 가지 독립 변인에 대한 지각에 따라 공중은 적극적 혹은 소극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한다는 사실을 입증해 왔다.

그런데, 최근 연구자들은(예: Kim, 2011; Kim, Hong, Park, Lee, & Park, 2012; Kim et al., 2008) 공중 분류를 상황적 차원(situational approach)에서만 접근할 경우 실무적 적용 가능성을 약화시킨다고 지적하면서 인구사회학적 속성 등을 반영한 통합적 접근법(cross-situational and situational approach)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기존의 인지/태도/행동 중심 연구와 이에 근거한 공중 분류 연구들이 공중의 세분화 자체에만 주목할 뿐 이를 실무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PR 커뮤니케이션 전략 모색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한다는 것이다(Chon & Kim, 2009; Kim, Downie, & Stefano, 2005; Park & Joeng, 2011). 이처럼 공중 분류를 상황적 차원에

서만 접근할 경우 분류된 공중을 대상으로 실제로 메시지를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전달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미디어는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등 실무적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제안되어 왔다(Chon & Kim, 200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공 이슈에 속하는 아동학대와 관련해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아동학대를 인식하고 있는지 상황 이론 중의 ‘문제 인식’에 주목하여 아동학대 인식을 구분하고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근거하여 그 차이점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는 ‘공중’의 분류 방식에서 상황 이론에 대한 적용을 보다 단순화하여 일반인 인식을 바탕으로 구성 개념을 도출하고 구성 개념에 대한 인구사회학적 속성 등을 반영한 통합적 접근법이라 볼 수 있다. 이에 아동학대 유형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인식이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를 파악하여 구성 개념을 바탕으로 인구사회학적 특성(예: 성, 연령, 직업, 지역, 수입 등)에 근거해 집단 간 차이점을 밝히고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PR 커뮤니케이션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국민들이 공적인 이슈 가운데 하나인 아동학대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문제 인식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에 근거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효율적 PR 커뮤니케이션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우선, 이론적/법적 아동학대 개념과 유형 등을 살펴

보고 아동학대 유형에 대한 인식과 관련해 그 구성 체계를 분석하여, 아동학대 개념의 구성 타당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후, 검증된 구성 체계를 바탕으로 인구사회학적 요인(성별/연령별/지역별/소득/직업)에 따라 아동학대 인식에 대한 차이점을 비교하고자 한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아동학대 구성 개념과 그 하위 차원들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살펴보고, 그 구성 체계에 따른 집단 간 차별성을 논함으로써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PR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추진하는데 보다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PR 커뮤니케이션에 있어 유효한 공중의 세분화 방향과 이에 따른 메시지 구성, 미디어 활용 방안 도출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를 위한 연구문제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우리나라 국민들은 아동학대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연구문제 2: 우리나라 국민들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은 척도로서 구성 타당도를 갖추고 있는가?

연구문제 3: 우리나라 국민들의 아동학대 구성 개념은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가?

연구 방법

연구 절차

본 연구에서는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 인식을 바탕으로 아동학대에 관한 측정 척도 및 이에 따른 집단 간 차이 비교를 통한 효율적인 PR 커뮤니케이션 전

Table 2. Preliminary Question for Child Abuse Scale

No.	Survey question	Remarks
item 1	Punching a child with a hand or hitting it lightly	'Physical violence'
item 2	Hitting the child's cheeks, face, and head with the palm	'Physical violence'
item 3	Kicking a child or kicking a child	'Physical violence'
item 4	Pushing a child hard	'Physical violence'
item 5	Hitting the whole body of a child without any help	'Physical violence'
item 6	Hitting the child's palm or hip with a rod	'Physical violence'
item 7	Beating a child with something other than a rod (belt, stick, broom)	'Physical violence'
item 8	Throwing objects (ashtrays, books, bowls, chairs, etc.) towards the child	'Physical violence (using tools)'
item 9	Threatening or suppressing children with knives or weapons	'Physical violence (using tools)'
item 10	Use a language that threatens children to create a fearful atmosphere	'Language violence'
item 11	Acting on a child (stupid, bad, jerky, etc.)	'Language violence'
item 12	Telling child to quit school, work, or earn money	'Language violence'
item 13	Telling child to die	'Language violence'
item 14	Completely defeat a child by severely disgusting	'Emotional abuse'
item 15	Publicly embarrassing children by using blame, resentment, rejection, oolong, or contemptuous language	'Language violence'
item 16	Ignoring or insulting a child's personality, feelings, or mood	'Emotional abuse'
item 17	Putting a child in a dark place such as a loft, a room, or a warehouse	'Physical violence (detention)'
item 18	Forcing children to do activities they can or can not do	'Physical violence'
item 19	Making the child see the house alone until it gets dark	'Physical violence'
item 20	Forcing a child to be alone in a particular place, such as a classroom or room, for exhortation purposes, or to be unable to move	'Physical violence'
item 21	Children's clothes do not change into clean clothes even if they become dirty	'Rearing and neglecting'
item 22	Allowing a child to play with dangerous goods (knives, tacks, pins, etc.)	'Body neglect'
item 23	Do not say anything to the child without reason.	Educational neglect'
item 24	If the child is sick, leave the child alone	'Body neglect'
item 25	A child does not care about someone else's money or money	'Educational neglect'
item 26	What the child does not have any relation to what he or she is playing with his friends	Educational neglect'
item 27	Do not worry if a child comes home late	'Rearing and neglecting'

No.	Survey question	Remarks
item 28	Intentionally excluding a child from meal time, class time, etc.	'Rearing and neglecting'
item 29	An act that does not knowingly respond to a child's needs or has no response	'Emotional neglect'
item 30	Touching a child's body even if the child does not like it.	'Sexual abuse'
item 31	Kissing a child by force	'Sexual abuse'
item 32	Trying to see the child's body by forcibly removing the child's clothes	'Sexual abuse'
item 33	Displaying a video or book to a child with an unusual behavior by an adult.	'Sexual abuse'
item 34	Touching a child's penis	'Sexual abuse'
item 35	Putting your penis on the child	'Sexual abuse'
item 36	An act that an adult wants to touch his / her body even though the child hates it.	'Sexual abuse'
item 37	Making children uncomfortable or uncomfortable by touching the child's body parts	'Sexual abuse'
item 38	To make sexually explicit or irritating sexual expressions regardless of the curriculum or to show children the related materials	'Sexual abuse'

략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에 아동학대 유형에 대한 범국민적 인식을 바탕으로 아동학대 유형에 대한 인식의 측정 척도를 도출하고자, 지난 2017년 6월 한 달 동안 전국 17개 시도 20~60세 이상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해 온라인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¹⁾

본 연구를 위한 예비 연구 단계에서는 우선, 선행된 연구 및 관련 법령 등을 살펴보았다. 이 과정을 통해 작성된 아동학대 척도의 예비 38문항에 대한 의미 전달력, 단어 사용의 적절성, 문법 등에 대한 양호도 검증과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구성된 예비 문항의 내용 타당도 확인을 위해 교수, 박사과

정생 등 5인으로 구성된 소집단 토론을 거쳐 도출된 문항을 반복적으로 검토하고 수정하는 작업이 진행됐다.

아동학대 유형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측정 척도 개발을 위한 내용 타당도를 확인한 이후, 서울 소재 대학생 20명을 대상으로 도출된 척도에 대한 검사를 시행해 아동학대 유형에 대한 인식 척도를 명확하게 이해하는지 각각의 항목에 대해 검사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예비 문항을 <Table 2>와 같이 확정하였다.

예비 연구용 척도를 300명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이후 이를 예비 연

1) 본 연구의 데이터는 (주)PMI의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 데이터로, 본 데이터는 대한민국 17개 시도의 지역/성/연령별 특성을 고려한 비례 할당 추출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 층화 표집 방법을 통해 추출됐다. 표집 규모는 1차 300명, 2차 700명 등 총 1,000명으로 구성돼 있고 이 표본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 $\pm 3.10\%$ 로 파악됐다.

구 분석에 활용하였다. 예비 연구 결과를 통해 본 검사에 활용할 문항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였으며 이후 수정한 척도 문항을 일반인 7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이후 본 연구 단계에서는 700명을 대상으로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척도의 요인을 확인하고, 모형 합치도 등을 통해 척도의 타당도 등을 확인하였다.

앞서 살펴본 아동학대 관련 선행된 문헌 연구와 「아동복지법」에서 구분한 학대 유형을 통해 아동학대 하위 요인이 ‘신체적 폭력’, ‘언어적·정서적 폭력’, ‘성적 폭력’, ‘방임’ 등의 4개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파악했다. ‘신체적 폭력’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의미한다.’²⁾ ‘언어적·정서적 폭력’은 ‘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 등 언어를 통한 폭력을 포함한다.³⁾ ‘방임’은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를 하는 경우를 뜻한다.⁴⁾ 또한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는 ‘성적 학대’로 분류한다.⁵⁾

이와 관련해 본 연구에서는 번스타인과 핑크

(Bernstein & Fink, 1998)가 개발하고 유재학 등 (Yu, Park, Park, Ryu, & Ha, 2009)이 국내 타당화 연구를 진행한 한국판 아동기 외상 질문지와 선행된 연구 및 기존의 아동학대 분류에 따라 아동학대의 하위 요인을 ‘신체적 학대’, ‘언어적·정서적 학대’, ‘방임’, ‘성적 학대’ 등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이러한 아동학대 유형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는 척도의 예비 문항으로 38문항을 수집했다. 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신체 폭력’, ‘신체 폭력(도구 사용)’, ‘신체 폭력(감금)’, ‘언어폭력’, ‘정서적 학대’, ‘양육적 방임’, ‘교육적 방임’, ‘성적 학대’ 등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 이러한 측정 항목에 대해 본 연구에서는 리커트 5점 척도를 사용하여 1점 “전혀 학대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부터 5점 “매우 학대라 생각한다”로 구성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동의 여부를 조사하였으며, 아동학대 관련 국민의 인식을 바탕으로 아동학대의 구성 개념에 대한 척도를 개발하여 이를 활용하고자 했다.

표본의 구성

예비 연구와 본 연구에 활용된 자료의 인구통계학적 구성은 <Table 3>, <Table 4>와 같다. 예비 연

2)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 제17조 제3호, 제71조 제2호).

3) “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 제17조 제5호, 제71조 제2호).

4)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양육 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 제17조 제6호, 제71조 제2호).

5)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를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 제17조 제2호 후단, 제71조 제1의2호).

Table 3. Demographic Composition for Preliminary Survey

		Frequency	%
Gender	Male	141	47.0
	Female	159	53.0
A tie rod	20~29 years	53	17.7
	30~39 years	53	17.7
	40~49 years	75	25.0
	50~59 years	71	23.7
	60 years or older	48	16.0
Education	College student	14	4.7
	Graduate school student	2	.7
	Undergraduate High School	61	20.3
	Graduated university	193	64.3
	University graduate school graduation or more	30	10.0
Job	Self-employment	35	11.7
	Service / Sales	22	7.3
	Professional / liberal	29	9.7
	Technical	105	35.0
	Management	8	2.7
	Official	9	3.0
	Labor	12	4.0
	Student	16	5.3
	Housewife	53	17.7
	Agriculture / Forestry / Livestock / Fisheries	2	.7
	Etc	9	3.0
Income	Less than 2 million won	24	8.0
	2~3 million won	47	15.7
	3~4 million won	58	19.3
	4~5 million won	59	19.7
	5~6 million won	57	19.0
	6~7 million won	20	6.7
	7 ~ 8 million won	17	5.7
	Over 8 million won	18	6.0
Sum		300	100.0

Table 4. Demographic Composition for Survey

		Frequency	%
Gender	Male	366	52.3
	Female	334	47.7
Age	20~29 years	132	18.9
	30~39 years	151	21.6
	40~49 years	160	22.9
	50~59 years	157	22.4
	60 years or older	100	14.3
Education	College student	30	4.3
	Graduate school student	8	1.1
	Undergraduate High School	129	18.4
	Graduated university	476	68.0
	University graduate school graduation or more	57	8.1
Job	Self-employment	53	7.6
	Service / Sales	30	4.3
	Professional / liberal	63	9.0
	Technical	278	39.7
	Management	18	2.6
	Official	29	4.1
	Labor	33	4.7
	Student	35	5.0
	Housewife	129	18.4
	Agriculture / Forestry / Livestock / Fisheries	2	.3
Etc	30	4.3	
Income	Less than 2 million won	72	10.3
	2~3 million won	108	15.4
	3~4 million won	120	17.1
	4~5 million won	122	17.4
	5~6 million won	107	15.3
	6~7 million won	56	8.0
	7~8 million won	36	5.1
	Over 8 million won	79	11.3
Sum		700	100.0

구 단계에서는 300명의 자료가 활용되었다. 남성이 141명(47%), 여성이 159명(53%)이었으며, 연령대는 40대가 25.0%, 50대가 23.7%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나머지 연령대는 20% 미만 수준이었다. 본 연구 단계에서는 700명에 대한 자료가 수집되었으며 남성이 366명(52.3%), 여성이 334명(47.7%)이었으며 연령대는 40대가 가장 많았고, 50대, 30대가 20% 수준이었으며 나머지 연령대는 20% 미만 수준이었다.

분석 절차 및 방법

본 연구는 아동학대 인식을 바탕으로 척도를 개발하고 그 척도 타당화 연구를 목적으로 하였다. 또한 개발된 척도로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하여 이를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PR 커뮤니케이션 전략에 활용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예비 검사에 앞서 문항의 평균, 표준 편차, 문항 총점 간 상관, 문항 간 상관을 검토했고, 척도의 하위 요인의 수를 확인하기 위해 이론적 배경, 누적 분산 비율, RMSEA 지수 등을 검토해 요인의 개수를 설정한 후 시각 회전 방법을 적용해 공통 요인 분석을 실시했다. 이후 예비 연구 분석을 바탕으로 척도의 최종 문항을 확정했다. 본 검사 분석에 앞서, 문항 평균, 표준 편차, 문항 총점 간 상관, 문항 간 상관, 하위 척도 간 상관 등을 검토한 후 확인적 요인 분석으로 척도와 요인 구조를 확인했다. 이를 바탕으로, 척도의 준거 관련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척도의 하위 요인과 심각도, 지식 등과의 상관관계 등을 파악했다. 아동학대 하위 요인과 심각도 사이의 법칙론적 연결망 조직(nomological network)을 확인하였으며 이후 성

별, 연령별, 지역별, 소득별 집단 간에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비교하였다.

예비 연구 및 본 연구의 문항 분석, 요인 분석, 타당도 분석 등을 위한 상관관계 분석, 집단 평균 비교 등은 SPSS 21.0을 사용했고, 척도의 타당성 검증을 위한 확인적 요인 분석 및 법칙론적 연결망 조직에는 M-plus 7.0을 사용했다.

연구 결과

연구 결과 1

척도 문항의 기술 통계치 검토에서는 평균 및 표준 편차의 수치가 너무 높거나 낮은지 등을 통해 변별력을 파악한다.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아동학대 유형에 대해 응답자가 동의하는지 정도를 조사하는 과정을 통해 척도를 구성했다. 문항 간 상관계수가 너무 높거나 낮은 경우 구인(構因, construct)을 대표하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문항 총점 간 상관계수는 0.2보다 작을 경우 검토 대상이 되는데, 모두 0.2 이상이었고, 내적 합치도는 0.783~0.911로 양호한 수준이었다. 30번 문항의 경우 제거 시 내적 합치도가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요인의 내적 합치도가 0.9 이상이며 해당 문항은 구성상 적절해 척도 구성에 포함했다. <Table 5>는 예비 척도 문항과 관련된 통계치와 내적 합치도를 보여 주고 있다.

예비 척도의 구성 요인 분석

본 연구의 첫 번째 연구문제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Table 5. Descriptive for Preliminary Scale

	<i>N</i>	Mean	Standard Deviation	Corrected item Total Correlation	Alpha of Item Deleted	Cronbach's A[pha
item 1	300	3.533	.972	.453	.779	0.783
item 2	300	4.640	.545	.641	.742	
item 3	300	4.883	.369	.498	.767	
item 4	300	4.473	.661	.521	.754	
item 5	300	4.886	.357	.498	.767	
item 6	300	3.706	1.044	.502	.775	
item 7	300	4.656	.588	.618	.743	
item 8	300	4.813	.468	.525	.759	
item 9	300	4.933	.275	.431	.776	
item 10	300	4.616	.539	.556	.887	
item 11	300	4.303	.702	.633	.882	
item 12	300	4.400	.771	.671	.880	
item 13	300	4.630	.600	.660	.881	
item 14	300	4.203	.777	.620	.883	
item 15	300	4.563	.594	.704	.879	
item 16	300	4.406	.727	.725	.876	
item 17	300	4.813	.489	.523	.889	
item 18	300	4.550	.634	.641	.882	
item 19	300	3.960	.860	.595	.886	
item 20	300	4.310	.850	.562	.888	0.911
item 21	300	3.836	.807	.617	.907	
item 22	300	4.000	.846	.688	.902	
item 23	300	4.063	.833	.722	.899	
item 24	300	4.503	.636	.619	.907	
item 25	300	4.180	.838	.707	.901	
item 26	300	3.860	.932	.792	.894	
item 27	300	3.846	.923	.781	.895	
item 28	300	4.430	.683	.652	.905	
item 29	300	3.963	.843	.682	.902	
item 30	300	4.673	.572	.549	.911	
item 31	300	4.626	.601	.625	.906	
item 32	300	4.770	.527	.753	.894	
item 33	300	4.790	.483	.715	.897	
item 34	300	4.820	.470	.709	.898	
item 35	300	4.906	.353	.702	.900	
item 36	300	4.833	.454	.763	.894	
item 37	300	4.830	.418	.771	.894	
item 38	300	4.806	.465	.740	.895	

아동학대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탐색적 요인 분석을 통해 예비 척도의 요인 구조를 살펴봤다. 요인 분석 시, 요인의 수 결정 방식은 스크리 검사, 누적 분산 비율, 해석 가능성 등 세 가지가 주로 쓰이는데, 고 윗값을 활용하는 스크리 검사는 누적 분산 비율 기준 방식과 요인의 수를 결정하는 방식이 유사하므로(Lee, 2000) 본 연구에서는 요인의 개수 결정 방식에 있어 누적 분산 비율, 해석 가능성에 더하여 모형의 적합도 지수인 RMSEA의 상한선 0.05를 사용했다(Lee, 2000; Preacher, Zhang, Kim, & Mels, 2013).

분석 결과, RMSEA의 상한선이 0.05 미만으로 떨어지는 모형이 도출될 때 요인의 개수는 6개였다. 따라서 누적 분산 비율, 해석 가능성 등을 고려해 본 척도의 요인의 개수를 6개로 설정했다. 이에 단일 주축 분해 방식으로 분석한 결과, 6개 요인의 누적 분산 비율은 0.63으로 나타났다. 요인의 개수를 6개로 결정한 이후, 요인 간 상관관계를 파악한 결과 요인 간 상관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인 요인 간 상관을 가정한 사각 회전 중 PROMAX 방식을 선택해 요인 분석을 진행했다. 본 연구에서 이 방식을 택한 이유는 탐색적 요인 분석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요인 간 상관관계를 허

Table 6. Exploratory Factor Analysis of Preliminary Scale: Eigenvalue and Variance Explained

Factor	Initial eigenvalues			Extraction sums of squared Loadings			Rotation Sums of squared Loadings
	Total	% of Variance	Cumulative (%)	Total	% of Variance	Cumulative (%)	Total
1	12.867	33.861	33.861	12.297	32.361	32.361	8.137
2	4.643	12.218	46.080	4.307	11.333	43.695	7.975
3	2.564	6.749	52.828	2.175	5.723	49.417	9.600
4	1.513	3.982	56.810	1.114	2.933	52.350	7.896
5	1.408	3.705	60.515	.967	2.544	54.894	5.120
6	1.077	2.834	63.349	.640	1.683	56.578	5.328

Table 7. Correlation Between Sub Factors of Preliminary Scale

	Factor 1	Factor 2	Factor 3	Factor 4
Factor 1	1			
Factor 2	.652**	1		
Factor 3	.396**	.591**	1	
Factor 4	.525**	.493**	.385**	1

Table 8. Exploratory Factor Analysis of Preliminary Scale

	Factor 1	Factor 2	Factor 3	Factor 4	Factor 5	Factor 6
Punching a child with a hand or hitting it lightly	0.581	-0.067	-0.014	0.159	-0.135	0.099
Hitting the child's palm or hip with a rod	0.868	0.013	-0.038	0.017	-0.005	0.054
Kicking a child or kicking a child	0.073	0.519	0.009	0.123	0.105	-0.040
Hitting a child at random	0.018	0.896	0.024	-0.125	-0.042	0.022
Threatening or repressing a child with a knife or weapon]	-0.181	0.606	0.003	-0.022	0.137	-0.014
Use a language that threatens children to create a fearful atmosphere	0.098	0.157	0.431	-0.030	-0.002	-0.015
Acting on a child (stupid, bad, jerky, etc.)	0.105	-0.066	0.435	0.063	0.100	-0.088
Tell the child to quit school and work or earn money	-0.171	-0.090	0.671	-0.023	-0.054	0.085
The act of telling the child to die	-0.085	0.000	0.672	-0.002	0.075	-0.040
Completely defeat a child by severely disgusting	0.131	-0.118	0.862	-0.053	0.003	0.125
Publicly embarrassing children by using blame, resentment, rejection, oolong, or contemptuous language]	-0.073	0.096	0.938	0.184	0.017	0.057
Ignoring or insulting a child's personality, feelings, or mood	-0.048	0.089	0.823	0.007	-0.041	0.020
Children's clothes do not change into clean clothes even if they become dirty	0.121	0.041	-0.099	-0.057	-0.091	0.501
Allowing a child to play with dangerous goods (knives, tacks, pins, etc.)	0.209	0.009	-0.158	0.036	-0.035	0.585
Do not say anything to a child if he / she is absent from school	0.079	0.024	-0.066	-0.042	-0.019	0.714
If the child's body is sick, leave it alone	-0.116	0.111	0.093	0.074	-0.013	0.425
A child does not care about someone else's money or money.	-0.068	0.031	0.052	-0.006	0.096	0.881
What the child does not have any relation to what he or she is playing with his friends	0.031	-0.026	0.037	-0.031	0.090	1.095
Do not worry if a child comes home late	0.036	0.019	0.000	-0.023	0.005	0.983
Intentionally excluding a child from meal time, class time, etc.	-0.168	0.083	0.168	0.136	0.035	0.606
An act that does not knowingly respond to a child's needs or has no response	0.042	-0.112	0.138	0.075	-0.119	0.669
Kissing a child by force	0.167	-0.223	0.101	0.595	0.377	0.026

	Factor 1	Factor 2	Factor 3	Factor 4	Factor 5	Factor 6
A row that tries to see the child's body by forcibly removing the child's clothes	0.042	-0.052	-0.030	0.602	0.477	-0.046
Showing a video or book to a child that an adult feels naked and behaves strangely	0.002	0.089	-0.113	0.106	0.578	0.074
Touching a child's penis	0.024	-0.006	-0.082	0.176	0.579	-0.062
Putting your penis on the child	0.008	0.346	-0.092	-0.068	0.709	0.005
An act that an adult wants to touch his / her body even though the child hates it.	0.006	0.079	0.003	0.070	0.881	0.061
Making children uncomfortable or uncomfortable by touching the child's body parts	-0.005	-0.025	0.127	0.037	0.863	-0.033
A line that shows explicit or irritating sexual expression regardless of the curriculum, or shows related materials to the child.	-0.122	-0.113	0.042	0.050	0.820	0.056

용하는 사교 회전(oblique rotation) 중 사회과학 연구에서 자주 사용되는 요인 회전 방식이기 때문이다(Jeong & Choi, 1996). <Table 6>의 요인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비교적 안정적으로 요인부하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본 검사의 확정된 문항

본 연구의 두 번째 연구문제는 개발된 아동학대 인식 척도가 구성타당도를 갖추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연구자들은 요인 분석을 통해 구성 요인을 확인하고 문항을 검토했다. 그 결과, 본 연구에 사용할 척도의 요인 및 문항이 <Table 9>와 같이 재구성됐다. 따라서 예비 검사를 통해 확정된, 본 연구에 활용할 최종 척도는 29개 문항으로 결정됐다. '1요인'으로 '문항 1·6', '2요인'으로는 '문항 3·5·9'가 함께 묶였다. '3요인'으로는 '문

항 10·11·12·13·14·15·16'이, '4요인'으로는 '문항 21·22·23·24·25·26·27·28·29'가, '5요인'에는 '문항 31·32'가, '6요인'으로는 '문항 33·34·35·36·37·38'이 구성됐다.

'1요인'은 손으로 아동을 때리거나 회초리 등으로 아동을 때리는 가벼운 신체적 학대로, '경(輕) 신체적 학대'로 명명하였으며, '2요인'은 아동을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리거나 회초리 이외의 벨트, 막대기, 빗자루 등으로 아동을 때리는 행위로 '중(重) 신체적 학대'로 명명하였다. '3요인'은 언어로 아동을 위협하거나 정서적으로 상처를 줄 수 있는 언어나 행위를 포함하므로 '언어적·정서적 학대'로, '4요인'은 아동을 혼자 두거나 돌보지 않는 행위로 '방임'을 나타내며 '5요인'은 아동의 몸을 만지거나 입을 맞추는 등의 성적 학대로 '경(輕) 성적 학대', '6요인'은 성인의 성행위를 보여 주거나 성기

Table 9. Question for Child Abuse Scale

	item #	questionnaire
Minor physical abuse	item 1	Punching a child with a hand or hitting it lightly
	item 6	Hitting the child's palm or hip with a rod
Serious physical abuse	item 3	Kicking a child or kicking a child
	item 5	Hitting the whole body of a child without any help
	item 9	Threatening or suppressing children with knives or weapons
Verbal and emotional abuse	item 10	Using a language that threatens children to create a fearful atmosphere
	item 11	To swear at a child (stupid, bad, jerky, etc.)
	item 12	Tell the child to quit school and work or earn money
	item 13	Tell the child to die
	item 14	Completely defeat a child by severely disgusting
	item 15	Denouncing / blaming / rejecting / giving off public disgrace using ugly / contemptuous language
Neglect	item 16	Ignoring or insulting a child's personality, feelings, or mood
	item 21	Children's clothes do not change into clean clothes even if they become dirty
	item 22	Allowing a child to play with dangerous goods (knives, tacks, pins, etc.)
	item 23	A child is absent from school and takes no action
	item 24	If the child's body is sick, leave it alone
	item 25	Do not care about stealing goods or money
	item 26	What the child does not have any relation to what he or she is playing with his friends
	item 27	Do not worry if a child comes home late
	item 28	Intentionally excluding a child from meal time, class time, etc.
item 29	An act that does not knowingly respond to a child's needs or has no response	
Minor sexual abuse	item 31	Forcing children to kiss
	item 32	Trying to see the child's body by forcibly removing the child's clothes
Serious sexual abuse	item 33	Showing sexually explicit material
	item 34	Touching a child's penis
	item 35	Putting your penis on the child
	item 36	An act that an adult wants to touch his / her body even though the child hates it.
	item 37	Making children uncomfortable by touching the child's body parts
	item 38	To make sexually explicit or irritating sexual expressions regardless of the curriculum or to show children the related materials

Table 10. Descriptive Statistics of Main Survey Scale

	<i>N</i>	Mean	Standard Deviation	Alpha of Item Deleted	Corrected Item Total Correlation	Cronbach's alpha
item 1	700	3.608	.942	.525		0.686
item 6	700	3.845	1.038	.525		
item 3	700	4.848	.410	.735	.831	0.869
item 5	700	4.870	.409	.740	.825	
item 9	700	4.897	.375	.779	.793	
item 10	700	4.610	.591	.594	.885	0.891
item 11	700	4.307	.716	.688	.875	
item 12	700	4.375	.766	.699	.874	
item 13	700	4.615	.639	.691	.875	
item 14	700	4.217	.772	.644	.881	
item 15	700	4.512	.653	.758	.867	
item 16	700	4.424	.700	.754	.867	
item 21	700	3.867	.830	.637	.913	0.918
item 22	700	4.000	.835	.725	.907	
item 23	700	4.044	.863	.753	.905	
item 24	700	4.472	.672	.599	.915	
item 25	700	4.122	.867	.743	.906	
item 26	700	3.875	.915	.787	.903	
item 27	700	3.915	.926	.791	.902	
item 28	700	4.404	.698	.640	.913	
item 29	700	4.028	.850	.708	.908	0.794
item 31	700	4.537	.705	.682		
item 32	700	4.754	.542	.682		0.920
item 33	700	4.764	.507	.789	.902	
item 34	700	4.778	.502	.747	.908	
item 35	700	4.854	.429	.688	.916	
item 36	700	4.812	.467	.793	.902	
item 37	700	4.778	.502	.836	.896	
item 38	700	4.747	.524	.779	.904	

Table 11. Correlations Between Sub-Factors

	Factor 1	Factor 2	Factor 3	Factor 4	Factor 5	Factor 6
Factor 1	1					
Factor 2	.169**	1				
Factor 3	.460**	.448**	1			
Factor 4	.339**	.232**	.611**	1		
Factor 5	.185**	.492**	.468**	.405**	1	
Factor 6	.158**	.636**	.504**	.390**	.738**	1

등을 만지는 등 ‘중(重) 성적 학대’로 명명됐다.

연구 결과 2

본 검사 문항 분석

문항 간 상관계수가 너무 높거나 낮은 경우 구인을 대표하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문항 총점 간 상관계수는 0.2보다 작을 경우 검토 대상이 되는데, 모두 0.2 이상이었다. 내적 합치도는 0.686~0.920으로 양호한 수준이었으며, 문항 제거 시 내적 합치도가 올라가는 문항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내적 합치도는 적절한 것으로 파악됐다.

본 검사 하위 요인 간 상관

하위 요인 간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최종 척도의 요인 구조를 확인한 결과, 척도의 하위 요인들은 0.158~0.738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모든 요인 간 유의미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검사 확인적 요인 분석

탐색적 요인 분석을 통해 예비 척도의 요인 구조를 확인하였으며, 요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검사에 활용할 척도 문항을 확정했다. 그 후 본 연구에서 사용할 29개 문항을 확정했고, 29개 문항을 활용해 본 조사가 이루어졌다. 확인적 요인 분석은 분석의 모형 적합도 측정치로 자료가 척도의 요인 구조를 지지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한 결과, 측정 모형의 적합도는 $\chi^2 = 1496.346$ 으로 모형이 자료에 부합하다는 영가설을 기각하였다($p = 0.000$). 그러나 χ^2 분포는 표본 크기에 영향을 받는 지수로 다른 적합도 지수인 RMSEA, CFI, TLI, SRMR을 동시에 확인하도록 하며(Boomsma, 2000; Kline, 2011; McDonald & Ho, 2000; West, Taylor, & Wu, 2012) 적합도 지수가 CFI 0.914, RMSEA 0.067, SRMR 0.064으로 모형이 자료에 적합한 수치임을 확인하였다(〈Table 12〉 참고). 또한 본 모형의 집중 타당도 및 판별 타당도에 있어 문제없음이 〈Table 13〉, 〈Table 14〉를 통해 확인됐다⁶⁾.

Table 12.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Model Fit of Main Survey Scale

	χ^2	df	TLI	CFI	RMSEA	Confidence interval 90%		SRMR
						low	high	
CFA Model	1496.346 (0.000)	362	0.903	0.914	0.067	0.063	0.070	0.064

척도의 하위 요인과 준거 변인들과의 관계 구조

본 연구의 두 번째 연구문제인 아동학대 유형에 대한 인식의 구성 타당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도출된 척도의 하위 요인과 준거 변인 간 관계 구조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아동학대에 대해 심각성을 인지하는 수준인 ‘심각도’와 아동학대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 수준인 ‘지식’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했다.⁷⁾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은 평균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Ha, 2003; Jo, 2003; Kim & Yoon, 2003) 아동학대 관련 연구에서 ‘심각도’ 역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Kim, 2003). 기존의 아동학대 관련 인식 연구에서는 아동학대 관련 이야기 식 사례를 통해 설문하는 방식인데 주로 부모의 행위가 학대에 해당하는지를 7점 척도로 묻는 방식이

다(Kim & Yoon, 2003).

아동학대와 관련된 논의에 따라, 아동학대에 대한 동의 여부와 아동학대에 대한 ‘사전 지식’, ‘심각도’와는 정적 상관관계 등이 예측 가능하므로 본 척도의 타당성 검증을 위한 준거 변수로 이 둘을 활용했다. 분석 결과, 아동학대를 구성하는 각 하위 요인은 아동학대 ‘심각도’ 및 ‘지식’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음이 <Table 15>를 통해 확인됐다. 또한 준거 타당도와 관련해 본 연구에서 개발한 아동학대 관련 동의 여부를 바탕으로 한 아동학대 척도의 하위 요인과 준거 변수로 설정한 아동학대에 대한 ‘심각도’, 아동학대에 대한 ‘지식’ 간에는 정적인 상관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6) 모형의 타당도 확인을 위해 집중 타당도와 판별 타당도를 확인하였다. 집중 타당도는 요인 적재량 0.5 이상, 개념 신뢰도(CR) 0.70 이상, 평균분산 추출 지수(AVE) 0.50 이상일 때 집중 타당도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판별 타당도는 평균분산 추출 지수(AVE) 값이 요인 간 상관계수의 제곱근을 상회하는지 여부로 판단한다.

7) 아동학대 관련 지식은 ‘아동학대에 대해 귀하께서는 이번 설문 이전에 어느 정도 알고 계셨습니까?’라는 질문에 1번 ‘전혀 알지 못했다’에서 5점 ‘매우 잘 알고 있었다’로 조사하였다. 아동학대 관련 심각도에 대한 문항은 ‘우리 사회에서 아동학대가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질문에 ‘전혀 심각하지 않다’에서 ‘매우 심각하다’의 5점 척도로 조사하였다. 문헌 고찰을 통해 도출한 아동학대 관련 네 가지 유형에 대해서는 해당 유형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 학대라고 생각하는지를 1점 ‘전혀 학대가 아니다’부터 5점 ‘틀림없는 학대이다’의 5점 척도를 통해 동의 여부를 확인하였다.

Table 13. Convergent Validity of Main Survey Scale

			Statistic			<i>C.R</i>	<i>CR</i>	AVE
			Unstandardized estimates	Standardized estimates	<i>S.E</i>			
item 1	←	Factor 1	1.000	0.664	0.000	–	0.9666	0.9358
item 6	←	Factor 1	1.312	0.790	0.124	10.554		
item 3	←	Factor 2	1.000	0.807	0.000	–	0.9925	0.9778
item 5	←	Factor 2	1.005	0.814	0.043	23.315		
item 9	←	Factor 2	0.991	0.875	0.040	24.975		
item 10	←	Factor 3	1.000	0.646	0.000	–	0.9949	0.9661
item 11	←	Factor 3	1.369	0.730	0.082	16.650		
item 12	←	Factor 3	1.490	0.743	0.088	16.840		
item 13	←	Factor 3	1.233	0.737	0.074	16.664		
item 14	←	Factor 3	1.393	0.689	0.088	15.800		
item 15	←	Factor 3	1.396	0.816	0.078	18.009		
item 16	←	Factor 3	1.470	0.802	0.083	17.702		
item 21	←	Factor 4	1.000	0.656	0.000	–	0.9962	0.9677
item 22	←	Factor 4	1.143	0.746	0.065	17.638		
item 23	←	Factor 4	1.227	0.775	0.068	18.030		
item 24	←	Factor 4	0.762	0.618	0.051	14.881		
item 25	←	Factor 4	1.257	0.791	0.070	17.983		
item 26	←	Factor 4	1.416	0.843	0.075	18.820		
item 27	←	Factor 4	1.427	0.840	0.076	18.808		
item 28	←	Factor 4	0.852	0.666	0.054	15.812		
item 29	←	Factor 4	1.164	0.747	0.067	17.408		
item 31	←	Factor 5	1.000	0.790	0.000	–	0.9873	0.9750
item 32	←	Factor 5	0.839	0.862	0.037	22.457		
item 33	←	Factor 6	1.000	0.826	0.000	–	0.9963	0.9785
item 34	←	Factor 6	0.942	0.785	0.039	24.405		
item 35	←	Factor 6	0.755	0.736	0.034	22.027		
item 36	←	Factor 6	0.931	0.835	0.035	26.466		
item 37	←	Factor 6	1.045	0.871	0.037	28.382		
item 38	←	Factor 6	1.024	0.818	0.040	25.775		

Table 14. Discriminant Validity of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Factor 1	Factor 2	Factor 3	Factor 4	Factor 5	Factor 6
Factor 1	0.935	0.338	0.211	0.114	0.034	0.024
Factor 2	.169**	0.977	0.200	0.053	0.242	0.404
Factor 3	.460**	.448**	0.966	0.373	0.219	0.254
Factor 4	.339**	.232**	.611**	0.967	0.164	0.152
Factor 5	.185**	.492**	.468**	.405**	0.975	0.544
Factor 6	.158**	.636**	.504**	.390**	.738**	0.978

** $P < 0.01$

diagonal bottom :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factors

diagonal top : square of correlation coefficient

The values presented on the diagonal are the AVE values

Table 15. The correlation between the sub-factors of scale and the criterion variables (Severity, knowledge)

	Severity	knowledge	Factor 1	Factor 2	Factor 3	Factor 4	Factor 5	Factor 6
Severity	1							
knowledge	.280**	1						
Factor 1	.229**	.156**	1					
Factor 2	.170**	.120**	.169**	1				
Factor 3	.220**	.150**	.460**	.448**	1			
Factor 4	.217**	.116**	.339**	.232**	.611**	1		
Factor 5	.109**	.124**	.185**	.492**	.468**	.405**	1	
Factor 6	.132**	.093*	.158**	.636**	.504**	.390**	.738**	1

법치망조직 분석

아동학대 척도의 구성 타당도 확인을 위해 척도의 요인과 준거 변인과의 인과 관계를 설정해 법치론적 망조직의 적합도를 확인했다. 아동학대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따라 아동학대 정도에 대한 인식의 심각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된 연구(예: Han, 2006; Yeo, 2007 등)에 따라 가설적 모형을

세우고 변인 간 관계를 확인하였다. 검증 결과, 구조 모형의 적합도는 RMSEA 지수 0.065, TLI 지수 0.902, CFI는 0.913, SRMR은 0.062로 적합도 지수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하위 요인에서 ‘심각도’로의 경로 중 ‘1요인’인 ‘경 신체적 학대’, ‘2요인’인 ‘중 신체적 학대’, ‘4요인’인 ‘방임만 ‘심각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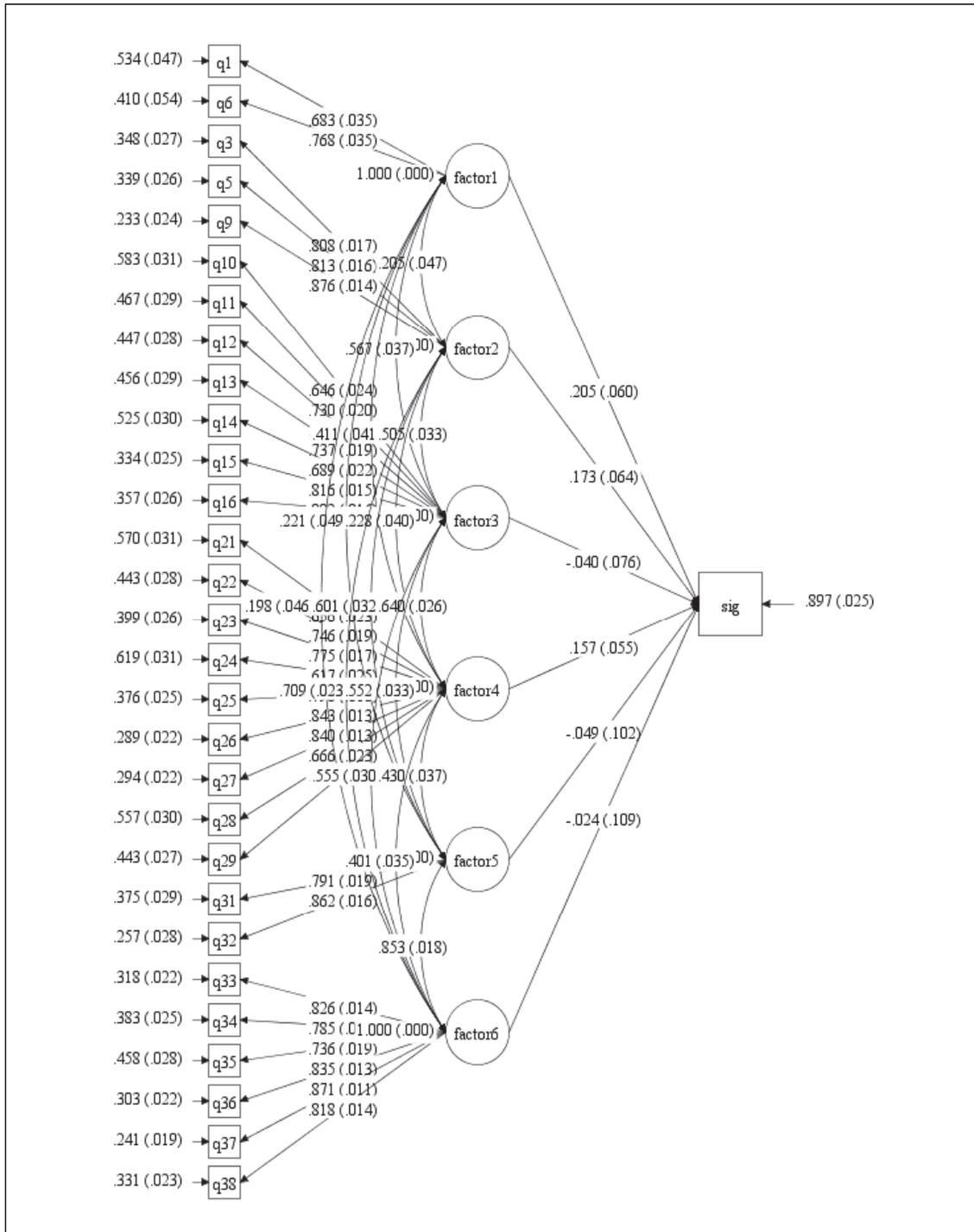


Figure 1. Nomological Network Analysis: Pathway Model Between Related Variables (Severity, knowledge)

Table 16. Nomological Network Analysis: The Structural Model fit

	χ^2	df	TLI	CFI	RMSEA	Confidence interval 90%		SRMR
						low	high	
The SEM model	1531.037	385	0.902	0.913	0.065	0.062	0.069	0.062

것으로 나타났다(1요인: $\beta = 0.205, p < 0.01$, 2요인: $\beta = 0.173, p < 0.01$). 4요인: $\beta = 0.157, p < 0.01$). ‘1요인’인 ‘경 신체적 학대’에 대한 인지 여부가 심각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컸다.

고차적 요인 분석

본 연구에서 확인적 요인 분석을 통해 척도 문항의 적합도를 확인한 결과, ‘아동학대’ 척도는 6개 요인이 하위 요인을 이루는 ‘이차적 요인(second order factor)’ 또는 ‘고차적 요인(higher order factor)’ 모형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구축된 척도가 일차 요인들을 통해 이차 요인을 측정하는 고차적 모형인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6개 요인 중 성적 학대와 신체적 학대에 대해 각각 2개 요인(예: 경 vs. 중)이 형성됐으므로 4개 요인으로 구성되는 모형에 대한 고차적 요인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는 측정된 일차 요인들 사이에 일차원성(unidimensionality)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Kim, 2016).

본 연구에서 <모형 1>은 ‘일차 요인 모형’이고, <모형 2>는 1차 요인 6개가 2차 요인을 구성하는 ‘이차적 요인 모형(2차 요인 1개, 1차 요인 6개)’이다. <모형 3>은 1차 요인 4개가 2차 요인을 구성하는 ‘이차적 요인 모형 2(2차 요인 1개, 1차 요인 4개)’이다. 즉, 성적 학대와 신체적 학대의 경중이 구분되지 않은 모형이다. <모형 4>는 ‘경 성적 학대’와 ‘중 성적 학대’가 2차적 요인으로 함께 묶이고 ‘경 신체적 학대’와 ‘중 신체적 학대’가 역시 ‘신체적 학대’로 함께 묶여 2차적 모형을 이루는 모형이다. <모형 5>는 결국 <모형 4>가 삼차적 모형을 형성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분석 결과, 6개 하위 요인이 일차원성을 이루지만 6개 하위 요인이 2차원성을 이루지 않는 <모형 1>이 가장 적합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⁸⁾

최종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 개발한 ‘아동학대’ 척도는 <모형 1>이 가장 적합도가 좋은 것으로 나타나 2차원성 이상의 상위개념을 설명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척도를 규명하고자 하였으

8) 본 모형의 다차원성 확인을 위한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모형 5> 간에는 위계성이 없으므로 BIC 지수를 활용하며, 이때 BIC 지수가 가장 낮은 모형이 가장 좋은 모형이다.

Table 17. Comparison of Parameter Estimates of Final Model

		χ^2	df	CFI	RMSEA	SRMR	AIC	BIC
Model 1	Primary factor model	1496.346	362	0.914	0.067	0.064	28375.661	28839.871
Model 2	Secondary factor model_6 primary factors	1830.080	371	0.889	0.075	0.107	28691.395	29114.646
Model 3	Secondary factor model_4 primary factors	2124.546	373	0.867	0.082	0.106	28981.861	29396.010
Model 4	Secondary factor model_4 secondary factors	1628.016	367	0.904	0.070	0.077	28497.331	28938.786
Model 5	Three-Factor Model	1726.747	369	0.897	0.073	0.084	28592.062	29024.4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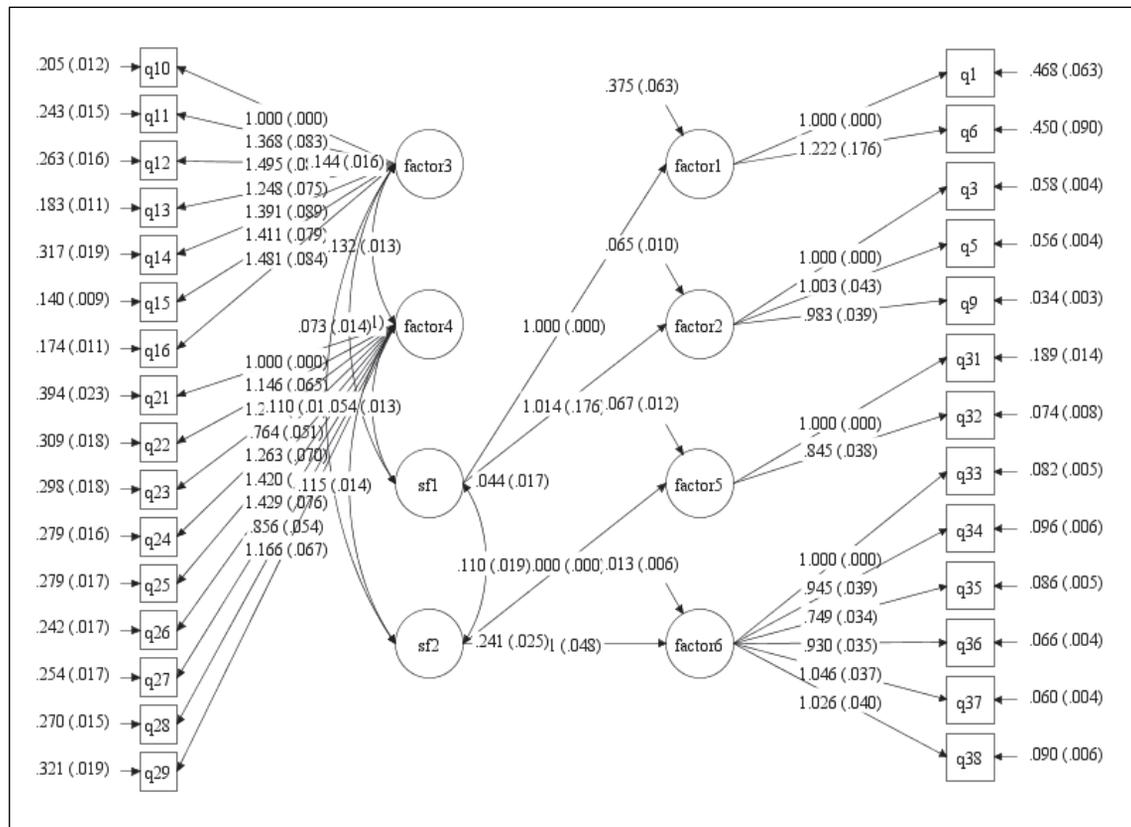


Figure 2. A model with four secondary factors

나, 분석 결과 아동학대 관련하여 구성된 6개 요인이 하나의 ‘아동학대’ 라는 상위 개념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은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 ‘성적 학대’와 ‘신체적 학대’에서 각각의 하위 요인을 합쳐, 4개의 하위 요인으로 구성된 고차적 모형 역시 결과는 같았다. 6개 하위 요인의 확인적 요인 분석 모형인 <모형 1> 다음으로는 <모형 4>가 적합도 지수가 좋았으며, <모형 4>는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 ‘방임’, ‘언어적·정서적 학대’ 등 2차적 요인이 4개로 구성된 고차 모형으로 <Figure 2>와 같다.

연구 결과 3

본 연구의 세 번째 연구문제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아동학대 유형에 대한 인식이 인구사회학적 집단에 따라서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

이다. 특히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그 특성을 분석해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학대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을 바탕으로 구성 개념에 대한 척도를 개발하였다. 이후 구성 개념에 대한 척도를 통해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성별, 연령, 지역, 학력, 소득, 직업 등 공중 집단 성격에 따른 차이점이 있는지 집단 간 아동학대 각 하위 요인의 평균 점수를 비교하였다. 이를 통해 아동학대에 대해 인구사회학적 특성 등 집단 성격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 인식의 차이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파악할 수 있었다. 연구 결과, 지역/학력/소득/직업에 따라서는 평균 점수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별과 연령에 따라서는 평균 점수에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별과 연령을 중심으로 <연구문제 3>에 대한 결과를 정

Table 18. Mean Difference for Gender

		<i>N</i>	Mean	Standard Deviation	<i>F</i>	<i>df</i>	p-value
Light physical abuse	male	366.000	3.716	0.916	0.131	698	0.718
	female	334.000	3.740	0.807			
Serious physical abuse	male	366.000	4.849	0.404	3.252	698	0.072
	female	334.000	4.897	0.291			
Verbal and emotional abuse	male	366.000	4.410	0.580	1.969	698	0.161
	female	334.000	4.467	0.491			
Neglect	male	366.000	4.001	0.677	11.935	698	0.001
	female	334.000	4.169	0.601			
Light sexual abuse	male	366.000	4.568	0.635	14.256	698	0.000
	female	334.000	4.731	0.483			
Serious sexual abuse	male	366.000	4.725	0.476	19.012	698	0.000
	female	334.000	4.860	0.319			

Table 19. Mean Difference for Age

		<i>N</i>	Mean	Standard Deviation	<i>F</i>	<i>df</i>	p-value
Light physical abuse	20~29 years	132	3.852	.828	1.211	4, 695	0.305
	30~39 years	151	3.665	.884			
	40~49 years	160	3.681	.883			
	50~59 years	157	3.767	.825			
	60 years or older	100	3.665	.907			
Serious physical abuse	20~29 years	132	4.901	.269	4.112	4, 695	0.003
	30~39 years	151	4.783	.518			
	40~49 years	160	4.866	.313			
	50~59 years	157	4.940	.221			
	만 60세 이상	100	4.866	.363			
Verbal and emotional abuse	20~29 years	132	4.560	.426	2.986	4, 695	0.018
	30~39 years	151	4.429	.584			
	40~49 years	160	4.348	.584			
	50~59 years	157	4.454	.496			
	60 years or older	100	4.404	.573			
Neglect	20~29 years	132	4.136	.621	0.422	4, 695	0.793
	30~39 years	151	4.083	.709			
	40~49 years	160	4.084	.674			
	50~59 years	157	4.060	.596			
	60 years or older	100	4.032	.616			
Light sexual abuse	20~29 years	132	4.704	.520	3.638	4, 695	0.006
	30~39 years	151	4.632	.629			
	40~49 years	160	4.696	.489			
	50~59 years	157	4.678	.518			
	60 years or older	100	4.455	.711			
Serious sexual abuse	20~29 years	132	4.829	.362	1.971	4, 695	0.097
	30~39 years	151	4.750	.523			
	40~49 years	160	4.828	.341			
	50~59 years	157	4.803	.367			
	60 years or older	100	4.710	.454			

리하고자 한다. 이는 응답자들이 아동학대 관련 사안에 있어, 성별과 연령에 따라 인지하는 바가 다르음을 뜻하며 이를 토대로 하여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PR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제안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성별

아동학대에 대한 6개 요인 중 남녀 성별에 따른 집단 간 평균 차이는 ‘방임’, ‘경 성적 학대’, ‘중 성적 학대’에서 나타났다. ‘방임’ 요인을 아동학대로 인식한 여자의 평균은 4.169점으로, 남자 4.001점보다 높았다. ‘경 성적 학대’와 ‘중 성적 학대’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평균 차이가 나타났다. 여자가 ‘성적 학대’에 대해서 남자보다 더욱 높은 점수로 동의하고 있었으며 ‘경 성적 학대’에 대해서 여자는 4.731점, 남자는 4.568점이었으며, ‘중 성적 학대’에 대해서도 여자는 4.860점, 남자는 4.725점으로 나타났다. ‘성적 학대’에 있어서는 ‘중 성적 학대’에 대해서 남녀 모두 평균 점수가 ‘경 성적 학대’보다 높았다.

연령

아동학대에 대한 6개 요인 중 연령대에 따른 집단 간 평균 차이는 ‘중 신체적 학대’, ‘언어적·정서적 학대’, ‘경 성적 학대’에서 나타났다. ‘중 신체적 학대’ 요인에 대한 아동학대 인식은 50대에서 가장 높았고, 20대가 그 다음으로 높았다. ‘언어적·정서적 학대’는 20대에서 평균 점수가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는 50대가 높았다. ‘경 성적 학대’ 역시 20대에서 평균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

으로는 40대가 높았다.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과 관련해 전반적으로 20대의 평균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본 연구에서 가장 낮은 연령대 집단인 20대의 경우 다른 세대에 비해, 폭력이나 학대의 문제에 대해서 보다 인지하고 있는 수준이 높았는데 이는 학대나 폭력에 대한 교육이 시작된 세대로서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결론 및 논의

아동학대 관련 살인/상해/유기 사건들이 연이어 보도되면서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커졌다. 특히 2014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된 이후 아동학대를 범죄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아동학대에 대한 범죄 인식과 처벌에 대한 두려움은 늘었지만 무엇이 아동학대인지, 얼마나 심한 체벌이나 모욕이 아동학대에 속하는지 그 기준은 여전히 모호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학대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바탕으로 아동학대 관련 척도를 개발하고 집단 간 각 구성 개념의 평균 차이를 밝혀 구체적·실질적 PR 커뮤니케이션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문헌 검토 과정을 통해 아동학대의 네 가지 유형에 대한 설문 문항을 수집하고, 이후 통계적 검증 과정을 통해 구성 개념 척도를 개발하였다. 이후 개발된 척도를 활용하여 인구조사회학적 집단 간 차이를 비교하고 그 결과를 활용했다. 본 연구는 그간 관련 법규나 유형 등을 통해 아동학대를 구분하던 기존의 방식과 별개로, 일반인의 인식

을 바탕으로 한 아동학대 인식의 구성 개념을 논의할 수 있었으며, 일반 공중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집단 간에 어떻게 다르게 형성되어 있는지 밝혀보다 구체적인 PR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제안했는데 본 연구의 가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아동학대 유형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연구했다. 이를 위해 탐색적 요인 분석 결과를 통해 도출된 아동학대 인식은 여섯 가지 요인으로 나타났다. '1요인'은 손으로 아동을 때리거나 회초리 등으로 아동을 때리는 가벼운 신체적 학대로 '경 신체적 학대'로 명명하였으며, '2요인'은 아동을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리거나 회초리 이외의 벨트, 막대기, 빗자루 등으로 아동을 때리는 행위로 '중 신체적 학대'로 명명하였다. '3요인'은 언어로 아동을 위협하거나 정서적으로 상처를 줄 수 있는 언어나 행위를 포함하여 '언어적·정서적 학대'로, '4요인'은 아동을 혼자 두거나 돌보지 않는 행위로 '방임'을 나타내며, '5요인'은 아동의 몸을 만지거나 입을 맞추는 등의 비교적 가벼운 성적 학대로 '경 성적 학대'로, '6요인'은 성인의 성행위를 보여 주거나 성기 등을 만지는 등 가볍지 않은 성적 학대이므로 '중 성적 학대'로 구성됐다. 척도의 구성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신뢰도 분석 및 타당도 검증을 위한 확인적 요인 분석, 법치망조직 분석 등을 진행했다. 분석 결과, 측정 모형의 적합도가 적정한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 3〉은 개발된 척도를 바탕으로 전략적 PR 커뮤니케이션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에 인구사회학전 변수인 성별/연령/지역/학력/소득/직업 등의 집단에 따른 평균 차이를 확인했다. 분석

결과, 지역/학력/소득/직업에 따라서는 아동학대 관련 인식에 있어 평균 점수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성별과 연령 집단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여성 집단 및 50대와 20대 연령 집단은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과 관련해 높은 평균 점수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경 성적 학대'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20대의 연령대가 60대의 연령대보다 더 민감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척도의 구성 타당도 검증을 위해 실시한 법치망조직 분석 결과를 통해서도 확인됐다. 아동학대 하위 요인에서 '1요인'인 '경 신체적 학대'($\beta = 0.205, p < 0.01$), '2요인'인 '중 신체적 학대'($\beta = 0.173, p < 0.01$), '4요인'인 '방임'($\beta = 0.157, p < 0.01$) 등이 종속 변인인 아동학대에 대한 '심각도' 인식에 미치는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학대 유형 등 범규와 문헌을 바탕으로 하여 예비 문항을 정리하고, 이후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척도를 개발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효율적 PR 커뮤니케이션을 제안했다. 이는 아동학대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 학대 사례에 대한 실제적인 적용에는 어려움이 따른다는 지적과(Yeo, 2007) 아동학대에 대한 법령에 대한 인식 개선 캠페인에 앞서, 아동학대 인식을 바탕으로 한 구성 개념 논의가 우선해야 할 것이란 발상에서 시작됐다. 본 연구를 통해 법이나 규제 등을 알리는 일보다 사람들의 주관적 인식을 바탕으로 한 척도 개발을 통해 아동학대 개념 차원 규명이 우선적으로 논의되고, 이러한 하위 요인 간 인식이 집단 간

에 어떻게 다른지 밝히는 작업 등은 향후 PR 커뮤니케이션 전략에 필요하다는 점이 확인됐다. 이에 따른 본 연구의 의의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학대 법 등 기존 논의에서 아동학대의 하위 유형이 신체적/정서적/성적/방임 학대 등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실제 국민들의 인식을 바탕으로 한 구성 개념은 여섯 개의 하위 요인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민들은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신체적 학대’와 ‘성적 학대’에 있어 경중을 구분하여 인식하는 것이다. 이는 아동학대의 유형이나 하위 차원에 있어서, 경중 등 심각성이 함께 논의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둘째, 본 연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어떻게 보완하고 발전시켜야 하는지 그 대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인의 인식을 바탕으로 아동학대의 하위 개념을 규명하였다. 아동학대 구성 개념을 통해, 아동학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밝히고, 일반인의 인식을 중심으로 만든 척도와 아동학대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하는 아동학대의 유형 간의 차이점을 알 수 있었다. 아동학대 문제는 단순히 처벌 위주의 정책 대신 아동학대 범죄의 구조와 관계성을 고려한 정책이 바람직하므로(Park, 2016) 이를 위해 아동학대의 개념을 규명하는 작업이 우선시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아동학대의 6개 하위 요인에 따른 집단별 평균 점수를 확인한 결과, 성별과 연령 집단은 평균 점수에 있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경 성적 학대’는 성별과 연령 집단 모두에서 평균 점수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이는 가벼운 성적 학대에 대한 인식이 다르게 형성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즉,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의 인식에 있어 집단 간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아동학대 예방 PR 캠페인이 전개되어야 함을 뜻한다. 성별 집단에서는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아동학대에 대하여 더욱 동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여성이 남성보다 더욱 민감하게 인식하는 것은 아동의 문제에 있어서 출산과 양육의 주 역할을 담당해서일 수도 있으며, 우리 사회에서 학대 및 폭력의 문제에 있어 오랜 세월 피해자로 위치했던 여성이 ‘아동 학대’의 문제에 대해서도 보다 관여도가 높게 작용하고 있는 것일 수 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한 원인에 대해 추후 연구를 통해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에 있어, 50대와 20대의 평균 점수보다 직접적으로 아동을 돌보는 정년기인 30대, 40대의 평균 점수가 낮은 것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겠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이들에게 직접적인 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으며 아동학대 관련 교육이 정부 정책으로서 마련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과 관련해 성별과 연령에 따라 집단 간 차이가 있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이에 근거한 PR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제안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남녀 성별에 따른 집단 간 평균 차이는 ‘방임’, ‘경 성적 학대’, ‘중 성적 학대’에서 나타나 아동학대 유형 중 성적 학대에 대한 메시지를 구성할 때 남성을 소구 대상으로 하여 성적 학대가 사소하거나 경미하더라도 여아에게는 심각한 아동학대임을 부각시키는 방식으로 메시지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메시지들은 남성들 중심의 온라인 커뮤니티(예: 스포츠/게임 등) 사이트와 블로그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때 아동학대 예방 PR 커뮤니케이션 효과가 보다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연령과 관련해서는 ‘중 신체적 학대’, ‘언어적·정서적 학대’, ‘경성적 학대’에서 집단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가 높은 60대 이상의 경우 다른 연령대보다 가벼운 신체적 학대에 대해 문제의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60대 이상의 연령대를 대상으로 하는 아동학대 예방 메시지는 끝밤이나 가벼운 터치도 아동학대임을 인식시키는 내용으로 구성될 필요가 있다. 언어적/정서적 학대와 관련해서는 초등학교 아동의 부모에 해당하는 40대의 평균 값이 타 연령대보다 높게 나타났다. 40대는 아동의 역동성을 자주 경험하고 이 과정에서 아동에 대한 훈육과 교육의 한계를 체험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아동을 위협하는 표현(예: 고성, 침묵 유도, 야유 등)을 통해 이들을 제어하려는 시도를 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커뮤니케이션 메시지는 위협 소구 기반의 훈육 방법 개선에 관한 내용으로, 초등학교 등 교육 기관을 통해 고성이나 위협이 아닌 부모 자녀 간 커뮤니케이션 기법을 통해 아동을 훈육하고 제어할 수 있도록 모색되어야 한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는 상황 이론에서의 문제 인식, 제약 인식, 관여도, 참조 대상 등 네 가지 독립 변수를 중심으로 한 공중 분류가 실무적 적용 가능성을 약화시킨다는 지적에 동의하여 상황 이론을 단순화하여 문제 인식을 중심으로 하고, 인구사회학적 속성 등을 반영한 접근법을 활용하였다. 문제 인식을 중심으로 하여 공중의 인식을 분류하고, 이를 인구사회학적 속성에 따른 집단 간 차이점을 밝힘으로써 보다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PR 커뮤니

케이션을 제안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우선 척도 구조를 밝히기 위한 준거 변수로 ‘심각도’만을 사용한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아동학대 척도의 타당도를 밝히기 위해서는 심각도 외에도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처럼 아동학대 인식 척도와의 인과적 관계와 아동학대 관련 행동 의도 등을 적용할 수 있는 여러 변인들이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변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구 목적과 맥락에 따라 타당도 높은 변인을 중심으로 한 연구 진행을 권고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학대 및 폭력에 대한 개념을 모두 문항에 반영하여 통계점 검정을 진행하지는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이는 본 연구의 6개 하위 요인이 ‘아동학대’라는 고차적 상위 개념을 설명하는 데 적합하지 못하다는 결과를 도출한 원인과도 관련이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학대나 폭력 등의 개념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문헌 검토 및 측정 문항을 수집해 학대의 상위 개념을 보다 포괄적으로 수용하는 척도 개발을 기대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PR 커뮤니케이션 활동의 효율성 증대에 관심을 기울였기 때문에 기존 상황 이론 연구처럼 다양한 변인에 대한 통합적 접근이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상황 이론의 문제 인식에 주안점을 두고 인구통계적 속성에 근거해 아동학대 인식 척도를 개발했다. 이는 기존 연구자들이 여러 변인을 상황 이론이라는 하나의 이론적 틀에 적용함으로써 실제로 PR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단순하고 명료한 메시지 구성/미디어 활용을 어렵게 했음에 주목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속 연구에서는

본 연구가 주목했던 문제 인식은 물론 관여도, 제약 인식, 효능감 등 상황 이론 관련 주요 변인을 포함한 PR 캠페인 전략 모색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좀 더 다양한 관점에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PR 커뮤니케이션 전략이 마련되길 바란다.

기존 아동학대 관련 규제는 법에 따라 처벌받는 수위에, 기존 아동학대 관련 캠페인은 아동학대 관련 피해와 관련 조치를 알리는 것에 급급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일반 국민의 인식으로 구성된 아

동학대 구성 개념에 근거해 일반인들이 아동학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주목해야 하고, 이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 PR 커뮤니케이션 활동이 요구됨을 지적했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관련 피해 상황/규제 법령/처벌 등을 단순히 알리는 PR 캠페인이 아니라 좀 더 실질적인 아동학대 예방 PR 전략이 마련돼야 한다. 본 연구 결과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정책 방향 설정에 구체적 도움을 주는 실무적·방법론적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

References

- Anthonyamy, A., & Zimmer-Gembeck, M. J. (2007). Peer status and behaviors of maltreated children and their classmates in the early years of school. *Child Abuse & Neglect, 31*(9), 71-991.
- Baldwin, K. (2001). Battered child syndrome as a sword and a shield. *American Journal of Criminal Law, 29*(1), 59-82.
- Bezzina, O. M., et al. (2017). Subjective and objective measures of dryness symptoms in primary Sjögren's syndrome: Capturing the discrepancy. *Arthritis Care & Research, 69*(11), 1714-1723.
- Bollen, K. A. (1989). A new incremental fit index for general structural equation models. *Sociological Methods & Research, 17*(3), 303-316.
- Central Child Protection Agency (2016). *2016 Child Abuse Case Line 100*.
- Chan, J. S., Chow, Y., & Elliott, J. M. (2000). *Professional and public perceptions of physical child abuse and neglect in Singapore*. Singapore Children's Society.
- Chan, J. S., Elliott, J. M., Chow, Y., & Thomas, J. I. (2002). Does professional and public opinion in child abuse differ? An issue of cross-cultural policy implementation. *Child Abuse Review, 11*, 359-379.
- Che, H. (1998). Perception of parents, children, and experts on child abuse concepts. *Children and Rights, 2*(1), 79-96.
- Chi, S. A., & Ma, S. H. (2000). A study on teachers' awareness of child abuse.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20*(1), 117-137.
- Chon, M., & Kim, J. (2016). Understanding active publics and their communicative actions through public segmentation applying situational theory of problem solving to public segmentation in an organizational crisis situation. *Journal of Public Relations Research, 20*(3), 113-138.
- Choi, J. (2011). A study on creative strategies of public service advertising for the prevention of child abuse based on long-term perspective. *Journal of Digital Design, 11*(4), 175-184.
- Choi, J., & Han, Y. (2008). *A comparative study on emotional intelligence and emotional control of abused and normal children*. The Korean Children's Society, Academic Publications, 121.
- Crosson-Tower, C. (2010). *Understanding child abuse and neglect* (8th ed.). Allyn & Bacon.
- Darwish, D., Esquivel, G. B., Houtz, J. C., & Alfonso, V. C. (2001). Play and social skills in maltreated and non-maltreated preschoolers during peerinteractions. *Child Abuse & Neglect, 25*(1), 13-31.
- Gil, D. (1970). *Violence against children*.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Hutchison, E. D. (1990). Child maltreatment: Can it be defined?. *Social Service Review, 64*(1), 60-78.
- Groenen, M. A., et al. (2012). Analyses of pig genomes provide insight into porcine demography and evolution. *Nature, 491*(7424), 393-398.
- Grunig, J. E., & Hunt, T. T. (1984). *Managing public relations CL*. California: Holt, Rinehart and Winston.
- Grunig, J. E., Grunig, L. A., & Dozier, D. M. (2006). The excellence theory. In C. H. Botan & V. Hazleton (Eds.), *Public relations theory II* (pp. 21-62).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
- Han, M. (2006). The concept of child abuse concept and the actual condition of child abuse in Korean society. *Jinlinondan, 13*, 307-329.
- Han, Y. (2000). *A study on the perception of child abuse in the community*. Hyupsung University.
- Jeong, C., & Choi, I. (1996). *Statistical analysis using 3PSSWIN*. Seoul: Trade Manager.
- Jeong, O. (2006). *Understanding child development*. Seoul: Hakjisa.
- Jo, M. J., & Park, J. (2011). An extension of the situation theory of publics in comparison to crossover situations between situational environments.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 55(4), 76-104.
- Jung, E., & Choi, J. (2011). A study on creative strategy of public-service advertising for the prevention of child abuse, targeting mandated reporters. *Journal of Digital Design, 11*(2), 63-72.
- Kempe, C. H., & Helfer, R. (1980). *The battered child*.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Kim, E. (2000). *A study on parent's perception of child abuse*. Chungang University.
- Kim, G. (2009). Influence of child abuse and neglect on child development. *The Scientific Publications, 24*(2), 27-46.
- Kim, J. (2014). Study on early childhood preservice teachers' cognition of child abuse and child abuse reporting system. *Cultural Exchange Studies, 3*(3), 99-125.
- Kim, J. C., & Choi, Y. Y. (2011). The influence of child abuse by parents on child aggression: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and victimization. *The Korean Journal of Child Education, 20*(1), 19-32.
- Kim, J. N. (2011). Public segmentation using situational theory of problem solving: Illustrating summation method and testing segmented public profiles. *PRism, 8*(2), 1-12.
- Kim, J. N., Ni, L., & Sha, B. L. (2008). Breaking down the stakeholder environment: Explicating approaches to the segmentation of publics for public relations research. *Journalism &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85*(4), 751-768.
- Kim, H. (2016). Causal approach to child abuse. *YeoSeonguri, 55*, 10-16.
- Kim, H., & Cho, H. (2015). Development of counseling and education program for prevention of child abuse and prevention of school attendance. *Research Report, 1*-230.
- Kim, S. S. (2014). *Of child care teachers developing a coaching program for the prevention of early childhood abuse*. Graduate School of Namseoul University.
- Kim, S. Y. (2016). *Fundamentals and extensions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oul: Haksisa.
- Kim, S., & Yoon, H. (2003). Survey of the general public and expert group on the concept of child abuse and neglect and social intervention.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31*, 393-422.
- Kim, Y. M. (1990). *Study on the community views of child abuse*. Ewha womans university.
- Kim, Y. H. (2006). A study of special school teachers' awareness on child abuse. *Korean Journal of Physical, Multiple, & Health Disabilities, 48*, 1-13.
- Kim, Y., Yun, E., & Lee, N. (2006). A survey on perception of child abuse among nurses in a general hospital.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ternal and Child Health, 10*(2), 189-197.
- Kim, Y., & Park, H. (2001). Recognition of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 teachers in child abuse in Ulsan metropolitan city: Focusing on the revised child welfare law. *Journal of Life Sciences, 3*(1), 43-56.
- Kite, D., & Tyson, G. A. (2004). The impact of perpetrator gender on male and female police officers' perceptions of child sexual abuse. *Psychiatry, Psychology and Law, 11*(2), 308-318.
- Ko, S. (1992). *Studies on defining child abuse in Korea and the perceptual differences between mother and child toward the child abuse*. Seoul National University.
- Lee, J. S. (2004). *The effect of abused experiences in childhood on violent behavior*. Korea University.
- Lee, J. Y., & Kim, J. Y. (2002). The study of preschool teachers awareness on child abuse and experience which found out abused child. *Korea Journal of Child Care and Education, 28*, 1-18.
- Lee, O. (2009). *A survey on the actual condition and recognition of child abuse in Pusan Women's Family Development Institute*.
- Lee, O. K., & Hong, S. O. (2010). Parents of elementary students perception of child abuse in Busan. *The Korean Journal of Child Education, 19*(3), 75-90.
- Lee, S., & Kim, M. (1996). Analysis of child abuse research trends in Korea. *Korean Family Welfare Studies, 1*, 106-117.
- Lee, S. M. (2000). *Fundamentals of factor analysis*. Seoul:

- Education Science History.
- Lee, S. Y. (2000). *A study on the recognition of the mandatory reporters of child abuse*. Ewha Womans University.
- Meade, A. W., & Kroustalis, C. M. (2006). Problems with item parceling for confirmatory factor analytic tests of measurement invariance. *Organizational Research Methods, 9*(3), 369-403.
-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Central Child Protection Agency. (2003). *National Child Abuse Report*.
-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Central Child Protection Agency. (2015). *National child abuse report*.
-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1). *Survey on child abuse*.
- Mun, S., Ku, C., Park, M., & Kim, H. (2007). *Korean society and child welfare*. Seoul: Yangseowon.
- Park, N. (2010). The application of Grunig's situational theory for Bloggers. *Journal of Public Relations, 14*(3), 69-105.
- Park, N., & Jeong, J. Y. (2011). Who does Rittweit do?. *Journal of Media Economics & Culture, 9*(3), 95-132.
- Park, H. (2016). A Suggestion for the criminal policies to prevent child abuse. *Korean Criminological Review, 27*(3), 253-283.
- Pecora, P. J., Whittaker, J. K., Maluccio, A. N., Barth, R. P., & Plotnick, R. D. (2000). *The child welfare challenge: Policy, practice, and research*. New York, NY: Aldine De Gruyter.
- Report of the National Census on Child Abuse Results Report (2017, 6, 27). Plane Global co., Ltd.
- Rose, R. L., Bearden, W. O., & Manning, K. C. (1996). Using individual differences to segment the "market" for an attribution-based substance abuse intervention program. *Journal of Public Policy & Marketing, 15*(2), 252-262.
- Santrock, J. W. (2006). *Child development*. (Kwak K. J., Chung, Y., Kim, M., Park, S., & Song, H., (Trans.). Seoul: Bakhaksa. (Original work published 2003)
- Smith, B. G., & Navarro, J. (2014). Integrating public relations educ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grated Marketing Communications, 6*(2), 7-17.
- Sin, H. Y., & Choe, H. Lim. (2003). The relations among child abuse by parents, child's aggression and interpersonal anxiety.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15*(2), 295-307.
- Kim, S. J., Kim, J. N., & Park, N. I. (2014). Building further on the situational theory of publics theoretical evolution to situational theory of problem solving and future research. *Journal of Public Relations Research, 18*(1), 330-366.
- Springer, K. W., Sheridan, J., Kuo, D., & Carnes, M. (2007). Long-term physical and mental health consequences of childhood physical abuse: Results from a large population-based sample of men and women. *Child Abuse & Neglect, 31*(5), 517-530.
- Toth, E. L., Aldoory, L., & Sha, B. L. (2006). Emerging trends: 24/7 PR mixes work and life: Unpublished report of the Committee on Work. Life and Gender Issues to the Public Relations Society of America National Board.
- Yeo, J. J. (2007). *A study on factors related to domestic child abuse: The case of abused children reported to a childcare establishment*. Daegu, KR: Catholic University.
- Yeo, J. J. (2010). *Effectiveness of protective factors of child abuse*. Daegu, KR: Catholic University.
- Yu, H. (2002). *A study on the recognition of the child abuse reporting officer in the child welfare act (2000)*. Sangji University.
- Yu, J., Park, J., Park, D., Ryu, S., & Ha, J. (2009). Validation of the Korean Childhood Trauma Questionnaire: The practical use in counseling and therapeutic intervention.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14*(1), 563-578.
- 최초 투고일 2018년 06월 09일
 논문 심사일 2018년 07월 30일
 논문 수정일 2018년 08월 11일
 게재 확정일 2018년 09월 13일

A Study on the Conceptual Composition Scale Development for the Prevention of Child Abuse and PR Communication Strategy

Moonki Hong

Professor of Media & Advertising at Hansei University*

Hyeyoung Park

Senior Researcher, Institute of Media & Culture at Sogang University**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how Koreans perceive child abuse, and what researchers can propose relative to PR communication strategy to prevent child abuse.

Methods

To that end, 17 cities and provinces across Korea were surveyed online with 1,000 stratified samples collected, in consideration of regional, gender, and age distribution (300 cases are for preliminary study, 700 cases are for the main survey). Based on this sample, the government wanted to develop a measure on how Koreans perceive the concept and types of child abuse. Researchers conducted 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related to child abuse, through a total of 29 questions, and six factors were identified.

Results

This study revealed that Koreans are aware of physical abuse by dividing it into different levels of physical abuse, unlike theoretical discussions and legal perspectives. Sexual abuse was also recognized by classifying it as different levels of sexual abuse. In addition, results of this study revealed gender and age difference among groups.

Conclusions

In this study, researchers proposed a child abuse prevention PR communication strategy based on the recognition gap in the process of communicating "physical abuse" and "sexual abuse" to children. Also, this study examined the possibility of public segmentation, and discussed strategic approaches to PR communication, such as message and media use.

KEYWORDS Child Abuse, Scale Development, Physical Abuse, Sexual Abuse, Neglect, Emotional Abuse, Verbal Abuse

* hmoonki@gmail.com, First Author

** cheerupyou@naver.com, Corresponding Author

Appendix 1

아동학대 측정 문항: 척도 개발 결과

요인명	설문 문항
경 신체적 학대	손으로 아동을 고집거나, 엉덩이를 때리는 등의 가볍게 때리는 행위
	회초리로 아동의 손바닥이나 엉덩이를 때리는 행위
중 신체적 학대	아동을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리는 행위
	아동의 온몸을 사정없이 마구잡이로 때리는 행위
	칼이나 흉기로 아동을 위협하거나 억압하는 행위
언어적 정서적 학대	아동을 위협하는 언어를 사용하여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행위
	아동에게 욕(명칭한 것, 못된 것, 병신 같은 것 등)하는 행위
	아동에게 학교 그만두고 일이나 해라, 돈이나 벌어 오라고 말하는 행위
	아동에게 나가 죽어라고 말하는 행위
	심하게 야단쳐서 아동의 기를 완전히 꺾는 행위
	비난/원망/거부/우롱/경멸적 언어를 이용해 공개 망신을 주는 행위
방임	아동의 인격이나 감정, 기분을 무시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아동의 옷이 더러워져도 깨끗한 옷으로 갈아 입혀 주지 않는 행위
	아동이 위험한 물건(칼, 압정, 핀 등)을 가지고 놀아도 내버려두는 행위
	이유 없이 학교를 결석해도 아동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는 행위
	아동의 몸이 아프다고 해도 내버려두는 행위
	아동이 남의 물건이나 돈을 훔쳐도 전혀 상관하지 않는 행위
	아동이 어떤 친구들과 무엇을 하며 놀든지 전혀 상관하지 않는 행위
	아동이 집에 늦게 들어와도 신경 쓰지 않는 행위
	식사 시간, 수업 시간 등에서 아동을 의도적으로 배제시키는 행위
아동의 요구에 대해 모른 척하거나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행위	
경 성적 학대	억지로 아동의 입을 맞추는 행위
	억지로 아동의 옷을 벗겨 아동의 몸을 보려고 하는 행위
중 성적 학대	성인이 발가벗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비디오나 책을 아동에게 보여 주는 행위
	아동의 성기를 만지는 행위
	자신의 성기를 아동에게 갖다 대거나 넣는 행위
	아동이 싫어하는데도 어른이 자기 몸을 만져 달라고 하는 행위
	아동의 신체 부위를 만져 아동을 불쾌하게 만들거나 불편하게 하는 행위
	교육 과정과 무관하게 노골적이거나 자극적인 성적 표현을 하거나 관련 자료를 아동에게 보여 주는 행위